

# 헬스장·노래방 17일 이후 영업 허용...아동 실내체육시설 내일부터

###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 위험 재평가 아동·학생 대상 돌봄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9인 이하라도 성인 대상 교습 운영은 안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17일 이후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태권도 학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8일부터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7일 이런 내용의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2단계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유흥시설 외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태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1월3일까지였던 2.5단계 조치가 이달 17일까지 연장돼 6주간 장기화하면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전체에 대해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한 17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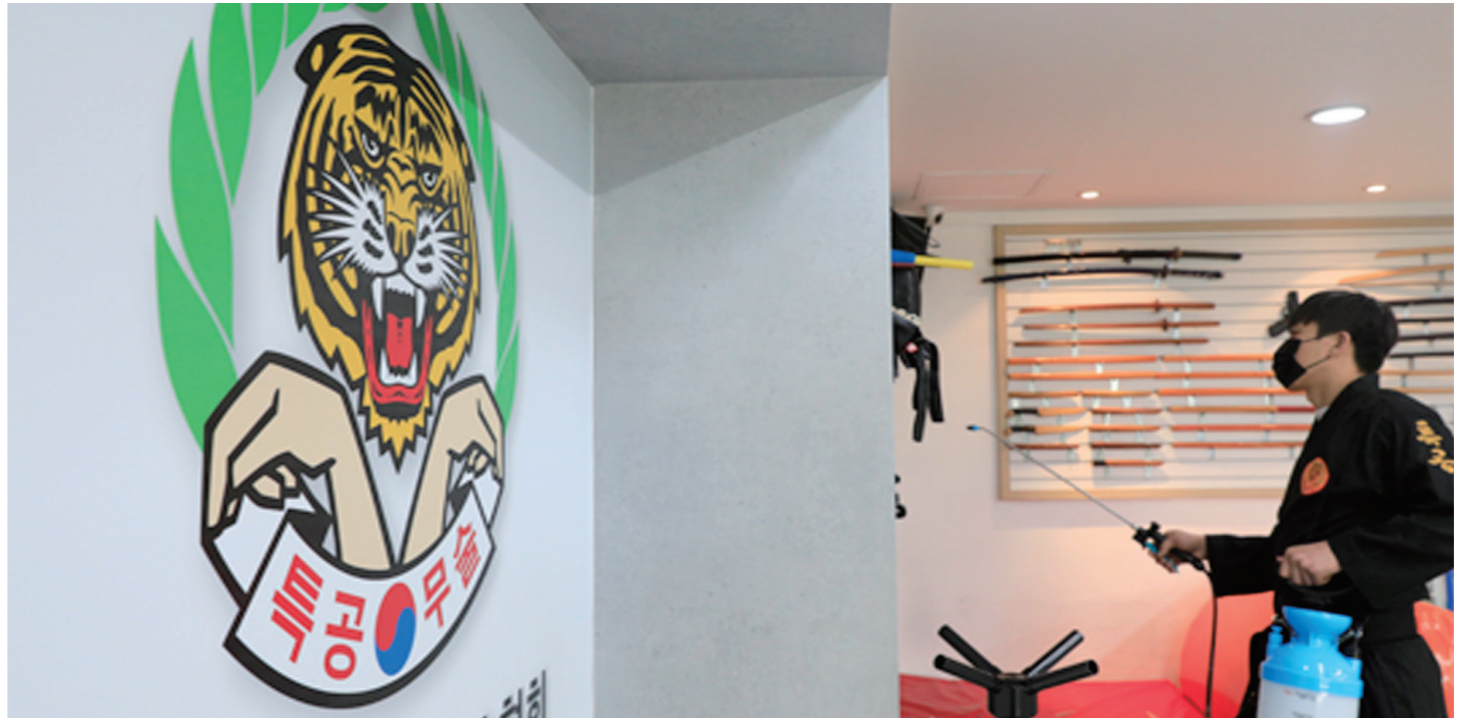
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실내체육시설 비롯해 학원업계, 노래연습장 업계처럼 6주간 수도권 시설에서 집합금지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점을 이해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처럼 환자 감소세 유지가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별 관리 소관 부처에서는 7~8일 이틀간 단체나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가장 반발이 거센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중수본이 질의응답을 위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집합금지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생 교습 등에 한해 방역 조치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방학과 함께 돌봄 공백 심화되면서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는 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동검도 등 운영 형태가 유사하지만 미신고 업종이거나 체육도장이 아니지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줄넘기·축구 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9명 이하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학원이나 태권도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해야 한다.

일부에선 성인에 대해서도 9명 이하 운영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번 교습 허용은 어디까지나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허용되지 않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학원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교습만 허용되고 성인 대상은 아니다”며 “헬스장이 교습 형태가 있으면 필텐데 아마 교습 형태로 된 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교습이 아닌 동일시간 9인 이하 허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인에 대한 운영 허용과 관련해선 “헬스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내체육시설은 탁구장, 농구장, 당구장, 실내스쿠터골프장 등 방대한 종류가 있다”며 “어떤 시설은 9명당 가능하고 어떤 시설은 9㎡당 가능하고 등 현장 의견을 들어서 방역수칙을 정비

할 필요가 있어 현장 의견 들어가며 수칙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에는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톨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카페 등에 대해서도 17일 이후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방역적 위험성 평가와 사회경제적인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축적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17일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다음주 정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b>호남신문</b> www.j-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b>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b>동부취재본부</b>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b>서울취재본부</b>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관)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small>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